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귀중

계약서의 부분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이하 '회사'라 함)와 아래의 거래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대부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
| 상호 |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 전화번호 | 02-351-3684 |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86828 | 대부업등록번호 | 2016-금감원-0055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4, 5층 501호(신사동, 디앤씨빌딩) | | |

| 채무자 | (서명/인) | 생년월일 | 성별 | 연락처 |
|---------|--|--|---|-----|
| 주소 | | | | |
| 대출금액 | 금 원정 (₩) | 대출계약일 | 20 년 월 일 | |
| 대출이율 | 年 % (月 %) | 입금전용계좌 | 신한 140-014-357430 (대출실행후 가상계좌 생성) | |
| 연체이율 | 年 % (月 %) | 약정일 | 매월 일 | |
| 중도상환수수료 |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계약일수) 단, 기 납입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음 | | |
| 상환방법 |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약정일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상환 매월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법 | 증명서발급기한 | 내점시 : 즉시 유선 및 우편 요청 시 : 3영업일 이내 발송 | |
| 이자계산법 | 1. 정상이자 : 대부잔액×이자율÷365 (윤년의 경우 366)×경과일수 (대출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계산) 2. 연체이자 : 채무자가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을 그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부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 1일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단,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내에서 대부 이율 +3%를 초과하지 아니함) 3. 대출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되기로 합니다. 4.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2021년 07월07일부터 연 20%입니다. | | | |
| 변제방법 |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 송금 등 당사자가 약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 | | |
| 부대비용 | 1. 신용조회비용 1,500원 2. 증명서 발급비용 없음 3. 담보상품에 한해 담보권설정 및 해지비용 발생(단, 설정관련 법무사비용은 당사부담) | | | |

| 채권양도 · 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 채무자 | (서명/인) |
|--|-----|--------|
| 본인은 본 계약서 및 대부거래기본약관 제17조에 의거 귀사가 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및 계약상 본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계약해제권을 포함한 계약자로서 갖는 모든 권리) (이하 '본 건 대부채권'이라함)를 귀사가 년 월 일 (이하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라 함)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목적(채권매각 등)을 위하여 양도함에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권한(위 양도관련 백지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위임합니다. 단, 본 건 대부채권의 이자 및 원금은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의 별도 서면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귀사에 계속 납입하겠으며,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의 별도 서면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면청구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본 건 대부채권의 이자 및 원금을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에게 직접 납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위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가 본인에 대한 신용판단 또는 채권추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수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외의 용도로 본인의 신용정보가 활용되거나 당해 양수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청구가 있기 전에 채권추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활용 중지,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파기 또는 삭제 시 해당 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

*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 들었음, 4. 들었음)

| | |
|---|-----|
| 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수령함 |
| 2.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기본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들었음 |
| 3. 증개수수료를 증개업체에게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 들었음 |
| 4.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들었음 |

* 대출직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출사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従)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설명거래)

-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접두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7조(이자율을 등의 제한)

- ①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대부업자가 선지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둑축 및 통지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 ② 대부업자나 대부업자에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조합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깃기로 한다.
-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상환 원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계약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력, 제공한 담보의 가치검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개인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 신청이 있을 때
-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10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10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에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순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부담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행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정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질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증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하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 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꼳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 ③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원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
- ③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권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주심 행위의 금지)

- ①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주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주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제보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아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아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이이나 그 뛰어난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행위
 6. 채무를 번체할 법률상의 부주의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번체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행위
 7. 암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주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주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리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계약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